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2가단534859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성승용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득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3,336,662원 및 그 중 42,058,999원에 대하여 2022. 8. 10.부터 2023. 10. 25.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1. 5. 2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 대하여 별지2 목록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대출

1) 원고는 2019. 6. 28.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경영에 필요한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금액 42,500,000원, 보증기한 2020. 6. 26.(추후 2022. 6. 24.로 변경되었다)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이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2)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1)의 위약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중소기업은행은 2019. 7. 3.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A에게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변제기 2020. 6. 26.(추후 2022. 6. 24.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2021. 9. 6.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지는 등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2021. 12. 31. 폐업으로 최종 부실처리되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여 원고는 2022. 8. 10.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42,058,9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에 의한 위약금은 96,050원, 채권보전비용은 1,181,613원, 약정연체이율은 이행일인 2022. 8. 10.부터 연 8%이다.

다.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A은 2021. 5. 2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5. 24.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경과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23.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의 임의경매신청으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280,004,000원에 매각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2) 2023. 2. 14.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B에게 87,887,515원을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합계 43,336,662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42,058,999원에 대하여 2022.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10. 25.까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연 8%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어 그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③ 원고가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42,058,999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실제 취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인 피고 B에게 물상담보로 제공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채무자인 피고 A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이 더욱 심화되어 일반 채권자의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 A은 피고 B과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수산물판매업 운영에 필요한 수산물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취득 후 2021. 9.까지 추가로 물품을 공급한 액수인 26,676,400원 만큼에 대하여는 위 근저당권이 유효하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여 사해의사가 없었기에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 채무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 하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당시의 여러 사정 하에서 그것이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18 판결 등 참조).

(2)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 B이 2021. 5. 21.자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설정한 채권최고액은 156,000,000원인데, 당시 피고 B의 피고 A에 대한 미수금채권액인 130,003,000원의 약 120% 수준이므로 근저당권은 피고 A에 대한 기존 채권에 대한 변제를 담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일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 B이 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이후 추가 거래로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은 피고 B의 주장에 의해도 26,676,400원에 불과하였고, 최종 2021. 10. 29.경 피고 B의 물품대금채권액은 131,034,400원 정도이므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 수준으로 유지된 점, 피고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 B이 기존 물품대금 채무를 근저당권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으면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피고 A에게 통보하였다는 등 피고 A의 사업 계속을 통한 갹생을 위해서는 위 근저당권설정이 부득이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전체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선의의 수익자 항변에 대한 판단

(1)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사실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3423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3. 2. 24.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에게 87,887,515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 및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 외에도 채권자 F, G, H, I 주식회사 등의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에 의하여 근저당권가처분결정(인천지방법원 2022카단103456)이 내려지는 등의 사유로 피고 B이 이 사건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향후 다른 배당절차에서 피고 A의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보전채권액을 넘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에게 별지2 채권 표시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기

별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의2(보증료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료 및 법 제34조에 따른 위약금은 대상업체의 신용도, 보증종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